

충청북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의료보호법 제9조"를 "의료보호법 제21조"로 한다.

제3조중 "(수입과 세출)"을 "(세입과 세출)"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4조(보조금의 교부신청) 시장, 군수는 의료보호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제1항 본문중 "기금을 보조할 경우"를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로 하고 동조 제1항 제1호중 "기금"을 "보조금"으로 하며, 동조 제1항 제2호중 "조례에 의한"을 "도칙 조례나 규칙에 의한"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보조받은 기금"을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하며 "1년 내지 3년"을 "9월 내지 3년"으로 하고 동조 제4항중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를 "시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한다.

제6조중 "(회계공무원의 임용)"을 "(회계공무원의 임명)"으로 하고 "의료보호법시행령 제11조"를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로 하며, "기금출납원"을 "기금출납이"로 한다.

제7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①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시장, 군수는 다음 각호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익년도 3월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 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장, 군수는 분기별로 의료보호기금의 운용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분기 종료후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u>의료보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 2 조 (기금의 재원) (생략)</p> <p>제 3 조 (수입과 세출) (생략)</p> <p>제 4 조 (<u>기금의 보조신청</u>) 시장, 군수가 <u>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를 실시하기 위하여 기금의 보조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u></p> <p>제 5 조 (보조조건) ① 도지사가 시장, 군수에게 <u>기금을 보조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것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u></p> <p>1. <u>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u></p> <p>2. <u>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u></p> <p>3. <u>기금운영상 증감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u></p> <p>② 시장, 군수가 도지사로부터 <u>보조받은 기금</u>을 보호대상자에게 <u>대부할 경우, 그 대부금은 무이자로 하고 1년 내지</u></p>	<p>제 1 조 (목적)----- <u>의료보호법 제 21조의</u>-----</p> <p>-----</p> <p>-----</p> <p>-----</p> <p>-----</p> <p>제 2 조 (기금의 재원) (현행과 같음)</p> <p>제 3 조 (<u>세입과 세출</u>) (현행과 같음)</p> <p>제 4 조 (<u>보조금의 교부신청</u>) 시장, 군수는 <u>의료보호사업에 응당하기 위한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제 5 조 (보조조건) ①-----</p> <p><u>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u>-----</p> <p>----- <u>교부한 보조금의</u>-----</p> <p>-----</p> <p>1. <u>보조금을</u>-----</p> <p>---</p> <p>2. ----- <u>도의 조례나 규칙에 의한</u>-----</p> <p>-----</p> <p>3. (현행과 같음)</p> <p>②----- <u>교부받은 보조금을</u>-----</p> <p>-----</p> <p>----- <u>9월 내지 3년</u>-----</p>

현행	개정 (안)
<p>3년 이내에 3월마다 이를 분할하여 상환토록 한다.</p>	<p>----- -----</p>
<p>③ (생략)</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시장,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을 상환의무자로부터 상환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u>도지사의 승인을 얻어</u> 그 상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부담으로 처리할 수 있다.</p>	<p>④ ----- ----- <u>시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u> ----- -----</p>
<p>제 6 조 (회계공무원의 임용) <u>의료보호법시행령 제11조의</u>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의 임명은 <u>기금출납원이</u> 필요한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p>	<p>제 6 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u>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u> ----- ----- <u>기금출납이</u> ----- -----</p>
<p>제 7 조 (보고 등) <u>기금을 보조받아</u> 사용한 시장, 군수는 다음 각호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익년도 3월 20일까지 <u>제출하여야 한다.</u></p>	<p>제 7 조 (보고 등) ① <u>보조금을 교부받아</u> ----- ----- <u>제출하여야 하며,</u></p>
<p>(신설)</p>	<p><u>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u> ----- <u>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u></p>
<p>(신설)</p>	<p>② <u>시장, 군수는 분기별로 의료보호기금의 운용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분기종류후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u> ----- <u>하여야 한다.</u></p>
<p>제 8 조 (준용) (생략)</p>	<p>제 8 조 (준용) (현행과 같음)</p>
<p>제 9 조 (예비비) (생략)</p>	<p>제 9 조 (예비비) (현행과 같음)</p>
<p>부칙</p>	<p>부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